간호학과 운영규정

	제정	:	2011.	8.	30.
	개정	:	2013.	8.	30.
	개정	:	2016.	4.	19.
	개정	:	2017.	2.	6.
	개정	:	2018.	6.	8
	개정	:	2018.	12.	17
	개정	:	2019.	8.	20.
	개정	:	2020.	3.	1.
	개정	:	2020.	8.	24.
	개정	:	2022.	3.	1.
	개정	:	2022.	6.	1.
	개정	:	2023.	3.	1.
П	개정	:	2023.	6.	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간호학과의 학습성과 기반 학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① 대학의 제 규정이 이 규정에 우산하며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시항에 적용된다.

② 가호학과의 세부운영은 내규로 정하다.

제3조(준수의무) 간호학과 교수, 조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다.

제2장 교육과정

제4조(교육과정 편성) ①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 체계에 근거하여 교양, 전공기초. 전공필수, 전공선택 등으로 구성한다.

- ② 교양 교과목은 학생이 졸업 시까지 총 25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- ③ 전공기초 교괴목 중 인문사회과학 교괴목은 8학점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④ 학과의 이론교육, 실습실교육, 임상실습교육과 관련된 운영규정은 내규로 정한다.

제3장 수업 및 성적평가, 장학, 유급, 졸업기준

제5조(수업 및 성적평가) 수업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는 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 제6조(장학생 선정) 교내·외 장학생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다.

제7조(유급기준) 정규학기(계절학기 제외) 동일학년 평점 2.0 미만 시 유급된다. 제8조(졸업이수학점) 간호학과 학생의 최소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며 이중 교양교과목 25학점 이상, 전공교과목은 전공기초.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을 합하여 총 105학점 이상을 이수해이 한다.

제4장 교원의 시수

제9조(교수시간)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보직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론수업은 1학점 당 1시간을 1시수로 인정 교내실습수업은 1학점 당 2시간을 2시수로 인정 임상실습수업은 1학점 당 3시간을 3시수로 인정한다.

제5장 교원의 학생지도

제10조(학생지도)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.

- ② 학업, 학교생활의 적응과 진로 및 취업자도를 위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생자도를 시행한다.
-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신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학생의 동의 시 교내 상담 전문인력에 의뢰하고 연계상담을 진행한다.

제6장 행정체계

제11조(학과장) ① 간호학과에는 학과장 1인을 둔다.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여 학과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학과장은 학과의 인사, 에산편성 및 집행 기타 중요 정책결정 시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인을 관계 부차장과 협의하여 학과의 지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한다.
 제12조(조교) ① 효율적인 학교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를 둔다.
- ② 실습조교는 건호사 면하증 소시자로 한다.
- ③ 조교는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장 위 원 회

제13조(위원회 설치)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계획 및 심의, 의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내에 학괴발전위원회, 학괴운영위원회, 교육괴정위원회, 실습교육위원회, 프로그램평가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학과 교수가 될 수 있다.

② 위원은 간호학과 교수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다.

제15조(위원회 회의 및 의결) 각 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.

제16조(간호학과 교수회의) 간호학과 교수회의는 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운영 전반과 학생자도에 관한 사항, 징계에 관한 사항 및 간호학과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·의결하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규정은 폐기하고, 관련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